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9. 23 선고 2015가단28250(본소), 2016가단102803(반소) 판결
[기변제금반환청구 · 매매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 종결 2016. 8. 26.

판결 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866,66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9.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나머지 34,866,664원에 대하여는 2016.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142,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곡,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가구제조 도소매 및 사무용품 도소매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C를 경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경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고, 아래 나.항과 같은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주식회사C의 주식과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4. 피고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경영권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발행주식 전체를 적법하게 위임받아 원고가 정한 주주에게 양도한다.

제2조(주식의 양도) 피고는 주식회사 C 발행주식 200,000주(액면가 1주당 500원)를 본 계약의 이행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4조(양도인의 의무와 책임)

1 피고는 장래에 세무서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위법사실을 통보 받을 일이 없으며, 다른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음을 확인한다. 단,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신용보증보험에 의한 은행대출금(신한은행, 기업은행)과 피고의 미수채권 회수 진행은 예외로 한다.

2 주식의 양도시기는 제6조(계약서에 기재된 제5조는 옳기로 보인다)에서 정한 채무를

피고가 원고에게 완제하는 시기에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양수인의 의무와 책임)

1 원고는 제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을 받은 피고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채무금을 원고의 보증책임으로 승계받아야 한다. 단, 은행 또는 보증기금의 채무승계 승인 불가시에는 1월 이내에 피고를 대위하여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매매대금의 내용 및 지급방법 등)

1 매매대금 총액은 47,866,663원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현금 10,000,000원

나. 은행대출채무 26,666,664원

1) 기업은행 대출의 상환할 잔액 20,000,000원

2) 신한은행 대출의 균분상환할 잔액 6,666,664원(단, 월 이자액은 별도)

다. 법인카드 채무 3,200,000원

라. 개인투자금 8,000,000원 (E의 닭날개 매출채권)

2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

가. 현금 지급방법

1) 현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은 2015. 9. 18. 지급하며 나머지 5,000,000원은 법무사에게 원고의 대표권(대표이사) 등기촉탁일에 지급한다.

2) 개인(피고) 투자금 8,000,000원은 E에서 2015. 10. 입금 즉시 우선하여 변제 지급한다. 단, 이행지체시는 원고가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5회 지급한다.

나. 은행 대출채무 지급방법

1) 원고의 대표권(대표이사) 등기 후 신용보증기금 및 대출은행으로부터 피고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승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2) 원고 명의로 보증대출 승인이 불가할 경우 피고는 2015. 10. 31.까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각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대표권(대표이사) 등기 후 법인카드에 대한 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승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는 지급된 것으로 한다.

4) 원고 명의로 법인카드 채무 지급방법이 불가할 경우 피고는 2015. 10. 5.까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대금지급 이행지체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은 아래와 같다.

가. 금전지급 이행지체: 지체일수에 년 20%의 이자율 적용

나. 은행 대출채무 승계보증 불능 또는 일시상환 지체시는 원고의 책임하에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다.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요 채권채무관계가 기재된 별지 정산현황표(갑 제8호증)를 제시하면서 채권채무관계를 설명해 주었고, 이후 위 정산현황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D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직무를 시작한 후 원고에게, 주식회사 C가 F정미소와 거래하면서 장곡농협으로부터 쌀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약 4,8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데, 주식회사 C가 F정미소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고, 원고가 장곡농협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위 미지급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마. D은 2015. 9.경 원고와 함께 장곡농협에 찾아가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C, 공급자장곡농협협동조합, 올레햇쌀 20kg 1,330포 공급가액 합계 48,545,00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원고 또한 위 거래명세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바. 원고는 이후 장곡농협협동조합에 위 마. 항의 48,545,000원을 변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자산현황과 채권·채무관계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6.2. 11.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장곡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한 48,545,000원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주식회사 C의 대출채무금과 신용카드사용대금,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합계3,597,339원을 더한 52,142,339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후 준비서면과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는 위 48,545,000원의 반환만을 구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제9호증은 제5호증과 동일한 문서로 보인다), 증인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C의 매출채권을 가공하거나 자산현황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D이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어 G이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G이 주장하는 채무가 주식회사 C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취소로 반환받아야 할 급부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장곡농업협동조합에 48,545,000원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어떤 급부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매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545,000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후에 체결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증인 D의 증언 및 원고가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장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별지 정산현황표(갑 제8호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가 장곡농업협동조합(정산현황표에는 F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다)에 48,54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착오에 빠져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C 자산 및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원고의 인식과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제적 가치의 차이는 원고가 위 변제행위에 나아가는데 있어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위 변제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라.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장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48,545,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 변제한 위 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변제한 채무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의 채무인바, 채무자가 아닌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자산현황과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장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8,54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 제2의가. 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하여금 주식회사 C의 장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C 주식 200,000주를 양도하고,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가 2015. 9.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원고로 변경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 명의의 은행 대출채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승계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사실에다가 제1항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제6조 제1, 2, 3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47,866,66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9.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1. 1.부터, 나머지 34,866,664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혁

정산 현황표

날짜	업 제 명	매출업채미수금	매입업채미수금	차액금	비고
8월19일	달날개	41,131,471			
	부자재	16,326,260			
	식당(부자재)	1,444,250			
	달(정육)	5,640,000			
	연세청 보증금	3,000,000			
	삼주 21개	445,200			
			48,545,000		
			6,551,138		
	(달날개외)		23,250,000		
	개인투자(달날개)		8,000,000		업체에서 입금시환후신으로 표본제한다.
	법인카드		3,200,000		차용한도 8,500,000
	재고금액				
	책배가구외	7,971,500			재고금액
	물류가구	19,648,000			재고금액
					2015.11.2
합 계		95,606,681	89,546,138	6,060,543	

감제 & 호증